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위험	위험	다소 위험	보통	양호	매우 양호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재배당상품**이며,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 **롱숏전략**으로 운용하는 모두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강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illegible]

	증권차입 매도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차입 및 매도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지만, 차입한 주가가 예상과 달리 상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증권차입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매수전략만 구사하는 전략에 비하여 원금손실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매입 방법	· 15 시 30 분 이전: 제 2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 15 시 30 분 경과후 : 제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방법	· 15 시 30 분 이전: 제 2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4 영업일에 지급 · 15 시 30 분 경과후 : 제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4 영업일에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과세 시기	세율	세액 공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	1)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2)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기준 적용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지방소득세 별도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C1클래스 가입 후 보유기간이 1년 경과시 마다 C2, C3, C4 클래스로 자동전환됩니다. 다만,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트러스트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630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truston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효력발생일	2021. 7. 7.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42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수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수수료 후취(B)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수체감(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기관(F)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truston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trustonasset.com)